한우 저능력 미경산우·암소 비육지원 및 자율감축 사업 안내

신청 접수 기간 | 2022년 8월 1일 ~ 9월 30일

문의 | 전국한우협회(02-525-1053) 및 농협경제지주(02-2080-6563)

한우가격 안정화! 우리 모두가 동참합시다!



공통사항

- 신청일 기준 본인 소유의 개체만 사업 참여가능. 단 기 신청개체는 중복참여 불가
- 신청(약정) 후 해당개체를 양도하더라도 도축기간 내 도축 시 신청인에게 지급 ('22년 8월 1일 이후 양수양도 가능)
- 도축 확인 후 지원금 및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급

1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

접수처	전국한우협회 중앙회·시군지부
지원내용	마리당 20만원
대상 개체	미경산우(14개월 이하/'21. 6. 1. ~ '22. 7. 31.)
도축 기간	36개월령 이하 미경산우로 도축
신청 한도	농가당 최대 40마리

2 한우 암소 비육지원

접수처	관내 지역축협
지원내용	**(Ⅰ형)**보전금 18만원/두 + 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 **(Ⅱ형)**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 (Ⅰ형 대비 2배 지급/보전금 미지급)
대상 개체	경산우 50개월 이하 / '18.6.1일 이후 출생개체, '22.7.31일 이전 분만한 암소
도축 기간	'23.2.1 ~ '23.6.30
신청 한도	농가당 최대 40마리(Ⅰ형 + Ⅱ형)
정액 공급	'23.10월 추첨 후 농가에 공급 (정액대금은 농가부담)

3 한우 암소 자율감축

접수처	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및 관내 지역축협
지원내용	우수정액 별도신청권 지원
대상 개체	**미경산우**(20개월 이하 / '20. 12. 1. ~ '22. 7. 31.) **경산우**('17.8.1일 이후 출생개체, '22.7.31일 이전 분만한 개체)
도축 기간	**미경산우** 개체기준 36개월 이내 도축 **경산우** '23.2.1 ~ '23.6.30
신청 한도	농가당 최대 40마리(미경산우 + 경산우)
정액 공급	**미경산우** 1차('25. 2~3월), 2차('25. 하반기) **경산우** '23.10월 추첨 후 농가에 공급 (정액대금은 농가부담)

✖ 제외 대상 농가 및 개체

- 3년(2019.1.1~2021.12.31)동안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181마리 이상 출하 농가
- 신규농가(2021.1.1 이후 축산업 등록한 자)는 송아지 실적 면제되나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 연간 61마리 이상 출하 시 제외(법인 포함)
- 이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 (농가보전금 반납 시 사업참여 가능)
-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[한우암소검정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]과 중복지원 불가
- 프리마틴, 신청농가와 소유주 불일치 개체

농림축산식품부 전국한우협회 한우지조금관리위원회 농협경제지주